



제 426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물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¹⁾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2. (생략) <u>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u> <u>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u> 24. ~ 4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 ----- -----. 1. ~ 22. (현행과 같음) <u><삭제></u> 24. ~ 41.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해 범칙금액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1. ~ 4. (생략) <u><신설></u>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u>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u>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체계에서는 고의로 물건을 투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형법」의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 공갈 등에 따라 처벌됨.²⁾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금지되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임.

경찰청에 따르면, 동 조항에 따라 처벌된 행위로는 해수욕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골프채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바다로 향하여 치는 행위, 1층 화단으로 화분 3개를 던지는 행위 등이 있음.

2)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하여 부주의한 물건투척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1995년 개정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연혁>

개정 연도	벌칙	범칙금
1989년	구류·과료	4,000원
1991년	구류·과료	25,000원
1995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30,000원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연간 111명~138명 수준임.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위반으로 인한 처벌 현황>

연도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합계
2020년	90	28	0	3	121
2021년	87	22	0	2	111
2022년	105	21	0	0	126
2023년	119	17	0	2	138
2024년	108	11	0	2	121

※ 자료 : 경찰청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범죄는 46개가 있음. 이 중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와 유사하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유형의 경범죄로는 위험한 불씨 사용,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³⁾ 등이 있고, 동 경범죄들은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와 동일한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음.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수준별 경범죄 종류>

벌칙 수준	경범죄 종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총포 등 조작장난
	위험한 불씨 사용	불안감조성
	지속적 괴롭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흥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단체가입 강요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자릿세 징수 등
	빈집 등에의 침입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무단 출입	무단소등
	구걸행위 등	물품강매·호객행위
	미신요법	마시는 물 사용방해
	의식방해	행렬방해
	노상방뇨 등	과다노출
	광고물 무단부착 등	장난전화 등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자연훼손 음주소란 등 관명사칭 등 지문채취 불응 공무원 원조불응	쓰레기 등 투기 인근소란 등 거짓 인적사항 사용 야간통행제한 위반 물길의 흐름 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

경찰청은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1995년 개정 이후 동일한 처벌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내 같은 처벌 수준의 다른 조항(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⁴⁾)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층 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10. (생략)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 41. (생략)

[참고자료]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따라 처벌된 사례>

[사례 1]

- 2021. 7. 8. 09: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00길 해수욕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골프채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바다로 향하여 치는 행위를 하였음 → 즉결심판, 벌금형 5만원

[사례 2]

- 2020. 8. 18. 07시3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00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만한 물건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던지는 행위를 하였음 → 즉결심판, 벌금형 10만원

[사례 3]

- 2022. 12. 17. 경북 칠곡군 00길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1회 던짐 → 통고처분, 범칙금 3만원

[사례 4]

- 2024. 7. 22. 18:50경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1층 화단으로 화분 3개를 던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함
→ 통고처분, 범칙금 3만원

※ 자료 : 경찰청